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개정 알림

1. 관련 :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
(교육부고시 제2023-14호, 2023.3.29. 일부개정)
2.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(교육부고시 제2023-14호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※ 동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(정책→교원)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 가능

- 붙임 1.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
(교육부 고시 제2023-14호)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3.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 교원양성대학, 각실과, 시도교육청



교육연구사

이재선

교원양성연수

과 장학관

김율리

교원양성연수 전결 2023.3.29.

과장

원용연

협조자

시행 교원양성연수과-2042

(2023. 3. 29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

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6503

팩스번호 044-203-6390

/ jslee22@korea.kr

/ 대국민 공개